

파주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5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4. 24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□ 제안사유

- 석유사업법이 개정(2000.1.28.공포,2000.7.29시행,법률제6228호)됨에 따라 석유판매업(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은 제외한다)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어 관련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- 석유판매업관련 수수료의 징수금액은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정함
(안별표1)
 - 주유소 등록 신청시 : 20,000원
 - 용제판매소 등록신청시 : 20,000원

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1] 제증명등수수료 요율표 제2호에 자.란을 다음과 같이한다.

구 분	기준	요 액	비 고
자. 석유판매업 관계			
(1)주유소 등록 신청	1건	20,000	
(2)용제 판매소 등록신청	1건	20,000	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기업지원과(☎ 940 - 4532)
입 안 자	기업지원과장	이 한 원
	기업육성담당	윤 복 용
	담 당 자	조 경 익

신 · 구조물 대비표

현행				개정안			
[별표1]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2.인가,허가,신고,신청,등록,지정,확인등 (단위:원)							
구분	기준	요액	비고	구분	기준	요액	비고
아. 부동산중개업 관계 (1)~(3)생략 <신설>				아.부동산중개업 관계 (1)~(3)현행과같음 자. 석유판매업 관계 (1)주유소등록신청 1건 20,000 (2)용제판매소등록신청 1건 20,000			